

경운대학교 산학운영공동체에관한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경운대학교는 U-III기반 지역 경제활성화와 기업-대학 간 국제교류활성화 및 우수인재 지역유치 전략 실현을 위해 경운대학교 산학운영공동체를 둔다. 산학운영공동체는 산학협력친화형 교과목 내실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All-Set 지원기반 구축 및 지역기업과 상호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통해 산학일체형 산학협력 실현을 준비 운영하는 조직이다.

제2조(산학운영공동체 등) ① 산학운영공동체는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산학운영공동체 운영을 총괄하고, 산학협력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대학-기관 간 상호지원을 협의하며, 산학업적 평가항목의 구성 및 심의 역할을 한다.

③ 실행위원회는 산학운영공동체 운영을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.

제3조(조직) ① 산학운영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, 위원은 산학관련 보직위원 5인과 외부위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다.

② 산학운영공동체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 부단장이 되고, 위원은 전임교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산학운영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학운영공동체 지원부서를 설치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산학운영공동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산학연계 교육과정 편성과 개정
2. 기업에 대한 All-Set 지원제도 편성과 개정
3. 산학업적 평가항목의 편성과 개정
4.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대한 심사위원 및 산학업적 평가위원의 추천
5. 산학협력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
6. 기타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

제5조(실행위원회) 산학운영공동체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교과목 개발 및 신설
2. 기업에 대한 All-Set 지원제도 개발과 운영
3. 산학업적 평가항목의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
4. 기타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

제6조(회의)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위원회 사무) 산학운영공동체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